#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6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5.

발 의 자 : 김 건 • 한기호 • 정성국

장동혁 • 안철수 • 김기웅

김석기 • 인요한 • 이성권

강선영 • 윤상현 • 권영세

조은희 · 김용태 · 박충권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(營農)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(營漁)·영림(營林)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,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·임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·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·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7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농(營農)"을 "영농(營農)[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농업"을 "농업·어업·임업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 ① 통      | 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 ①  |  |  |
| 일부장관은 <u>영농(營農)</u> 을 희망 | <u>영농(營農)[영어(營</u> |  |  |
|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          | 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|  |  |
|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         | 이하 같다]             |  |  |
| 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| <u>.</u>           |  |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|  |  |
| 2. <u>농업</u> 현장 실습       | 2. <u>농업·어업·임업</u> |  |  |
| 3. • 4. (생 략)            | 3. • 4. (현행과 같음)   |  |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  |  |